

國內·外 航空宇宙法の 研究 動向과 國內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洪淳吉**, 申弘均***

< 目 次 >

서 론	법의 체계론에서 본 항공우주법
제1장	해외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동향
제2장	항공우주법학의 연구방법론과 발전 방향
제3장	항공우주법학의 성립 동향과 발전 전망
제4장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필요성
결 론	항공우주법학의 성립과 발전

서 론 : 법의 체계론에서 본 항공우주법

다양한 사회 현상을 규율하는 법률이 단순한 법조문의 집합체가 아니라 법규범의 통일체로 이루어졌고, 특히, 논리적인 통일이 달성된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법의 체계(legal system, Rechtssystem)라고 부른다. 그러한 논리적 통일은 다양한 법규범의 통일적이고 자기조직적인 체계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체계 전체의 존립과 작동을 내부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규범이 한 사회의 가치라던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그것이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논리가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의 체계의 수립은 특정한 논리의 수립을 전제로 한다. 그 논리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특별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대학원장,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부회장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상임이사

는 어떤 것인가? 먼저 한 사회에 있어서 존재하는 여러 체계와 법체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법체계에 담겨 있는 논리의 한 측면을 알 수 있다. 법체계는 사회의 다른 체계와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재판이라는 하나의 제도와 절차를 두고 볼 때,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는 법규범에 독특한 논법이 작용한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사용되는 논법은 다른 사회 활동에서 통용되는 것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한 논법은 상당 기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점은 법규범에서의 논리가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 주기도 한다. 또한 법규범에 따라서 사회의 분쟁이 조정되고 해결되는 것이지 무질서속에서 임시적이고 또는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규범이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논리는 법규범이라는 큰 체계내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여서, 다양한 법 체계들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일정한 법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정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법체계들에 있어서 그 논리가 나름대로 고유한 것인가, 또는 그 논리가 앞서 본 것처럼 통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법체계들이 구분된다. 민법, 형법, 상법 또는 헌법 등이 그러한 체계로서 구분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며, 법을 분류함에 있어서 그러한 체계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그 각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도됨에 따라서, 민법학, 형법학, 상법학 및 헌법학 등의 다양한 법학의 분야가 나뉘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법체계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원리(principle)를 갖고 있다. 그 원리들은 다른 법체계와는 성질과 내용이 다른 것이기에 고유성을 갖는 것이고, 또 그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규범들이 정해지기에 법체계로서의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법의 지도원리로 인정되는 과실책임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은 죄형법정주의를 지도원리로 하는 형법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산재해 있는 법규범들을 그 고유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로 나누어 봄으로써, 각 법체계에 담겨 있는 원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체계에서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럼으로써, 법규범의 발전의 정도가 파악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법규범의 독자성,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법학의 발전도가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주법이라는 새로운 법규범의 출발 이후,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우주법학의 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나의 법학 체계로서의 수립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국내에서의 항공우주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영공의 수직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항공법과 우주법의 구분을 피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양 분야의 규범과 연구를 항공우주법 및 항공우주법학이라 칭하기로 하겠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항공우주법으로부터 발전하려는 새로운 학문 체계의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1장 해외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동향

1957년 스푸트니크 위성의 발사를 전후하여, 항공우주법학의 최대 관심사는 우주공간을 항행하는 위성에 대해서 영공 주권이 미치는 것인가의 문제였다. 특히, 위성에서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대로 학문적 연구 방향으로 이어졌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누가 먼저 위성을 발사하고, 누가 먼저 상대를 제압할 능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반복해서 천명하였다. 이에 항공우주법학은 우주의 평화적 원칙의 정치적 성격에서 기인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고, 1967년 우주 조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그러한 연구 동향은 계속되었다. 미국의 Carl Q. Christol, Stephen Gorove, C.W. Jenks, 소련의 V.S. Vereshchetin, 프랑스의 Charles Chaumont 등이 이 부문에 대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반면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우주의 이용 분야가 통신과 자원 탐사 등으로 확대되고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활동이 본격화되자, 해외 항공우주법학은 이제 새로운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 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연구로서, 우주 활동의 여러가지 측면 중 사법과 경제법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서 그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는 또한 항공우주법을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동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국내법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제1절 사법과 경제법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발전

우주활동의 상업화와 민간화는 기존의 항공우주법의 규범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의 Michel Bourély는 1986년 한 연구 논문에서 “현재의 우주법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공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

민간 기업이 위성을 소유, 발사하여 우주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운용하기도 하고,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참여하여 위성의 발사서비스를 위한 기업을 설립하는 등, 우주활동의 민간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련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국제공법적인 성격의 규범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국제공법적인 기존의 항공우주법보다는 다른 독립된 법률 체계의 적용을 받아오던 행위들과 분리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우주활동에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우주법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 상업적, 민간 활동들을 규율하는 다양한 종류의 규범들은 기존의 항공우주법의 국제법적인 법원들에서 연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에 항공우주법학의 시각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의의를 갖게 된다. 민간 기업에 의한 위성발사서비스 사업이 시작될 무렵, 해외의 항공우주법학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및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조약상의 조항과 그에 따른 법리가 민간 기업의 발사 활동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²⁾

두번째 주요 연구 테마는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이 우주법의 기본 원칙인 전 국가 이익 존중 원칙과 어떻게 합치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남극과 대륙붕을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법과는 달리,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에 기초하여 항공우주법은 우주를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우주활동은 전 국가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통신위성에 의한 상업 활동, 자원탐사 위성이 수집한 자료의 판매 사업등이 과연 그 원칙과 합치되는가의 문제는 항공우주법학자들이 공론화시켰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Aldo Armando Cocca는 그 원칙은 자기집행적 (self-executing) 성격의 것으로서,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강력히

1) Michel Bourély, “le droit de l’espace”, *Aéronautique et l’Astronautique*, 1986년, 117호, 60면

2) J. Chapez, “ARIANESPACE: première société commerciale de transprt spatial”,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83년 제4호 ; Martin Rothblatt, “State jurisdiction and control in outer apac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1969년 제12차 학회

주장한 바 있다.³⁾

제2절 “우주경제법”, “우주통신법”에 대한 연구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우주활동의 평화적 목적이 어떻게 법 규범적 테두리 내에서 지향되고 있는가, 우주 상업활동은 전 국가 이익존중 원칙과 합치하는가에 관한 문제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는, 우선 냉전의 종식, 소련의 해체 등과 더불어, 사회주의 이념 및 그와 유사한 많은 정치경제학적 발상들의 퇴보속에 1960년대에 득세하였던 사회주의적 성격, 제3세계가 주창하였던 원칙들이 퇴색하기 시작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주활동의 법적 성격, 우주법의 발전과 역할을 가늠하게 하여 주는 국제연합의 우주평화위원회 (Committee of Peaceful Utilization of Outer Space, COPUOS)에서 소련과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과거와 같이 미국 및 서방 국가의 논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전개하지 않아왔다. 예컨대, 우주활동의 전 국가 이익 존중 원칙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1990년도부터 동 위원회가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원칙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쿠바만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 원칙을 주장하고 미국 기업의 우주 활동을 강력히 비난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 발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하에, 우주활동에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들 중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법규범을 “우주경제법”(Droit spatial économique)라고 규정하고 우주법의 한 분야로서 발전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⁴⁾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각종 국내법, 사인간의 계약, 및 관련된 민, 형사상의 법률관계를 우주경제법이라는 체계화된 법규범하에서 규율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예컨대, 위성의 발사 허가에 관련된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의 국내법, 위성의 발사 계약, 위성체의 구매 계약, 위성체의 제조물 책임, 자원탐사 위성이 수집한 자료의 저작권 문제들이 기존의 다

3) Aldo Armando Cocca, “Legal implications of economic activities in outer spac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1981년 제24차 학회 ; “The principle of the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1970년 학회 등

4) Mireille Couston, “Droit spatial économique”, SIDES, 1994년

른 법규범보다는 우주경제법이라는 체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제2장 항공우주법학의 연구방법론과 발전 방향

본 장에서는 항공우주법학이 법률학의 독립적인 한 분야로서 발전을 하고, 또한 인접 다른 법률학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항공우주법학이 독립적인 법률학의 한 분야로서 성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학문적 필요성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곧 항공우주법이 국제법이라던가 민법과 같은 인접 법학 연구 부문의 지도 원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기도 하다.

제1절 항공우주법의 국제법적 지도원리의 발전 동향

1. 국가관할권의 성립과 행사

1) 관할권의 성립

현대의 항공우주법은 항공법이 적용되는 공간과 우주법이 적용되는 공간을 구분하여 그 적용 영역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의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항공법, 아니면 우주법이 적용된다는 이른바 기능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행물체는 우주물체(space object)로 간주되고, 그 우주물체는 타국의 영공 내지는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항행의 자유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법은 기존의 영공 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관할권 이론과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공간은 무주물(res nullis) 내지는 공동의 소유(res communim)이라고 간주하면서 우주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항공우주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관할권이 그러한 공간에서 주장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국제법상의 관할권 시각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된다.

먼저, 타국 상공에서의 우주물체의 비행의 경우, 현재까지 우주항행의 자유 원칙은 그 타당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습법상의 원칙으로 출발

하여 1967년 우주조약에서 성문화된 이래, 아직까지 우주물체의 상공 비행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주항행의 자유는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확립하고 있는 영공 주권의 원칙 및 각종 비행의 자유 원칙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주공간상의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은 항공우주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8조는 자국 국적으로 등록한 우주물체 및 그 물체에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 국적 국가가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영유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우주 공간 자체에 대한 관할권이 아니라,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본 조항상의 “통제권”(control)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먼저,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의 개념과 비교하여 볼 때, 1958년 공해 조약 제5조는 “선박상에서의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등록 국가가 관할권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본 우주조약 제8조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조항은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라는 방식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⁵⁾ 즉, 우주물체에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주선의 선장(또는 기장)은 탑승 인원의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 내지는 사법적 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할권 및 통제권의 행사 범위는 국내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2) 관할권의 행사 범위와 방식

미국의 경우, 형법 및 형사 절차법은 우주물체에서의 미국 국내법의 관할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권은 “우주에서 비행이나 항행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설계된 수송체로서 미국이 등록 국가로 된 경우, 그 수송체의 비행중”에 적용된다. 여기서 “비행 중”의 의미는 “지상에서 탑승 후 모든 외부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를 위해서 그 문들이 지상에서

5) “Sovereignty and the law of outer space re-examined”, Stephen Gorove, *Annals of Air & Space Law*, 1977, pp. 316-317

열린 순간까지로서 관할 당국이 그 수송체,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순간”까지로 정의된다.

항공기상에서의 범죄 행위의 억지를 위한 1966년 동경 협약이 이와 유사한 “비행 중”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행 중에는 당해 항공기 기장이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금권 등의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국가간 협정에 의한 것인 반면에, 아직 우주물체상에서의 관할권과 통제권에 대해서는 국제 협약이 없고, 국내법상의 규정만이 있다.

3)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설정

앞에서 본 미국 국내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에 탑승한 인원의 국적에 상관 없이 그에 탑승한 자는 누구든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두번째 중요한 사항은 미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근거는 그 우주물체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선박이라던가 항공기의 경우, 그 관할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조건상의 차이가 있다. 선박의 경우, 등록 국가의 관할권이 인정되되 등록 국가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행하여야 한다는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항공기의 경우, 1944년 시카고 조약은 등록 국가가 그 항공기의 국적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주조약 제8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미국 국내법은 단순히 등록만에 의해서 관할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실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가의 국제책임

1967년 우주조약 제6조는 자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성통신, 위성방송 및 위성에 의한 자원 탐사 등 우주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국제책임의 개념과 범위가 재분석되고 있다.

먼저, 국가의 국제책임이 부인되는 경우가 그러한 논의를 부추기게 되었다. 위성 자원탐사에 관한 원칙을 천명한 1986년 국제연합 결의안의 경우가 그것이다. 본 결의안은 원칙 4조에서 자원탐사 활동이 탐사되는 국가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유보를 취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미국 정부는 1967년 우주조약 당시에 존재하였던 책임의 범위 및 일반 국제법상의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책임을 부담하기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는 자원탐사와 관련

되 국가의 국제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은 그 용어의 상식적인 의미를 존중하고 신의칙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바, 정부가 부담하는 국제 책임은 정부가 자원탐사위성을 운용하는 경우에만 발동되는 것이고, 다른 자원탐사 행위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책임 부담에 대한 유보는 위성에 자원탐사에 관한 국제연합 결의안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법령에서도 견지되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국가를 탐사한 자료를 분배함에 있어서 탐사된 국가의 주권 및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원칙을 민간 위성탐사 기업이 위반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는 자원탐사 자료를 분배하는 것은 지상 활동이며 우주활동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 제6조 및 1986년 국제연합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절 항공우주법의 민법적 요소와 성질

1. 항공우주법상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개인과 기업

항공우주법의 지도 원리가 민법의 그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게 된 배경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 규율 대상이 국가만이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일반 사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1967년 우주조약의 제6조는 협정 체결 국가는 자국민 및 조직체의 우주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제법적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조항은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도 우주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사실상, 우주활동의 상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 그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의미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위성등의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공우주법은 그 규율 대상을 국가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확장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법상의 원리가 적용되게 된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그러한 해석상의 논의를 떠나서, 본 조항의 자기집행력에 관한 문제다. 국제 조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그 조약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기에 본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 이행의 방식과 내용이 국

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기에 본 조항은 자기집행력이 없다는 해석이 대두된다. 우주항행의 자유라던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우주 활동등의 기본적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그 이행을 위해서 자국민과 기업을 어떻게 감독하는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자국민과 기업에 대해서 감독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그러한 국내법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냐에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비준 국가들 중에서 본 조약상의 의무를 직접 원용하면서 국내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및 스웨덴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자국민의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특별하고 독립된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기존의 법령에 의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 민법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각종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령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항공우주법은 그 제정 당시부터 민법상 원리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항공우주사법의 발전 동향

1) 개인 또는 기업의 우주활동 수행권의 규율

미국, 영국 및 스웨덴과 같이 항공우주활동과 관련된 특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한 우주 활동을 대부분의 경우 허가제로 규율하고 있다. 스웨덴의 “우주활동법”(Act on space activities, 1982)은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과 발사체의 발사, 및 인공위성 등의 우주물체의 운용에 적용된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스웨덴 정부가 국제협약상의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들이 정부에 보상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우주법령”(Outer space act)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한다. 자연인과 법인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허가제로 규율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자는 자신의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보험에 가입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그 법령의 제목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법령이 우주활동을 규율하려는 특정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통신 관련 법령들이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권이나 사업의 형태를 규율하는 법령들은 위성통신이나 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운용에

대해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일정한 규제 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 통신법 (Communications act)라던가,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우리나라의 전파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는 통신 관련 법령상 위성의 소유나 운용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 사업을 행하려는 기업이 그 통신망으로서 인공위성을 확보하고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과실책임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우주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위성을 구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상 과실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이 규정되게 된다. 이 계약은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민법 내지는 계약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법의 원칙 및 발전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에 항공우주사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인공위성의 제작자나 발사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위험 분산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연원이 항공우주법의 일반 원칙 및 관습에 있기에 항공우주사법의 발전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먼저, 1967년 우주 조약 및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해 수립된 항공우주법 원칙이 그것이다. 본 협정들은 우주 물체가 비행중인 항공기 또는 지상의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 발사 국가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주 산업의 발달 초기에 발사 능력을 독점하고 있던 미국이 채택한 방식은 발사 서비스의 이용자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여서 그러한 손해 발생시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계약상의 특정 조항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권을 발사 서비스 이용자가 포기하도록 명시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NASA가 민간 기업을 위해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서는 발사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책임의 면제도 계약상 명시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는 위성의 제작 및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위성의 제작 및 발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제도는 다른 제작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⁶⁾

제3장 항공우주법학의 성립 동향과 발전 전망

1. 우주활동 다변화에 대한 국제법학의 불충분성

우주 개발의 초기 당시, 국가간에 체결된 국제 협정들은 각국의 우주물체들의 우주 항행이라는 사회 현상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그 협정들을 통해서 수립된 각종 원칙들은 일반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과 원리 체계에 편입되어 취급될 수 있었다. 예컨대 우주항행의 자유 원칙이 우주 항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영유 금지, 전 인류 및 국가의 이익 존중 원칙들은 우주 항행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부과된 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원칙들은 국제법의 체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종류의 법 체계로서의 특징과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회현상과 법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일반 국제법학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주활동의 상업화 내지 민간화는 그러한 국제법학에 의한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주경제법”(droit spatial économique)을 하나의 독립된 법 체계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학문으로서 항공우주법학이 새로이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2. 우주경제법학의 전개

“우주경제법학”은 우주활동의 상업화와 민간화에 따라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 현상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우주활동의 주체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기에 때문에, 국제법학에 의해서만 연구되는 것은 부족하다

6) “Spacecraft construction contracts”, Michael F. Flint,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Section on business law conference, Singapore, 1986.

는 점에서 우주경제법학은 다른 법학의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주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 규범들은 국가들에 의한 국제협정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법원에 의해서 제정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예컨대, 위성통신을 위한 국제위성통신기구(INTELSAT)는 국가간의 협정과 기업이 참여하는 운용 협정(operating agreement)에 의해서 운용된다. 또한, 국가간의 협정에 기초하지 않고 기업간의 협의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기초해서 국제 위성통신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저궤도 위성이동통신의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이한 지도 원리를 가진 법체계가 공존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지도 원리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경제법학의 주장자들은 우주경제법이 새로운 법체계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법의 체계에 속하는 규범들과 공법의 체계에 속하는 규범들이 공존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러한 공존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 왔다. 즉, 초창기 우주개발부터 우주 공간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국가가 우주활동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국제책임원칙은 국가라는 법 주체의 개입을 원칙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현재의 법체계상에서의 사법에 속하는 규범들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법규범의 집합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시된다.⁷⁾ 예컨대 계약상 채무와 채권에 관한 것이기에 사법 체계의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할 많은 사항들이 공법의 요소를 담은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또는 민법에서의 계약에 관한 원칙들과는 다른 특별한 계약 조건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규범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 제작사나 발사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권한 등이 그에 속한다.

세번째로 현재까지의 우주법상의 규범들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서 다른 법체계 또는 새로운 법체계의 개입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위성의 발사와 운용이라는 우주활동에 관련되는 행위이지만, 과거 우주법의 원칙들에 의해서 규율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구분되어 진다는 점이다. 자원탐사 위성의 활동이라던가 직접위성방송용 위성의 활동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책임의 발동 요인이 그것이다. 위성을 이용한 활동이지만 국가의 국제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우주활동이라는 영역이 있고, 위성

7) "Droit spatial économique", Mireille Coustou, Ed. SIDES, 1994, pp. 31

을 이용한 활동이지만, 자원탐사 자료의 분배는 우주활동이 아니라, 지상활동으로 보자는 시각이 그 예이다.

제4장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필요성

법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대상은 항공우주법이라는 법규범 자체일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 대학의 법학 교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우주법학에 대한 연구는 해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의 항공우주활동이 해외 국가에 비해서 그 규모와 범위면에서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미진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성통신이라던가, 각종 자원탐사의 자료를 이용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규범들이 항공우주법의 구성 요소와 분리되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된다.

본장에서는 먼저, 항공우주활동에 대해서 해외 국가의 경우, 구체화되어 있는 여러 법규범의 발전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서 국내의 위성통신 등의 항공우주활동도 그러한 법규범의 발전에 의해서 규율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1절 해외 국가의 위성통신 규율 법규범

1. 미국

미국의 위성통신 및 방송에 대한 법령과 제도들은 1934년 통신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 제정하는 여러가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즉, 위성통신을 위한 사업권의 허가제도는 다른 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신법 301조 및 310조에 의하고 있으며, 위성에 탑재되는 중계기에 대한 시설 허가에 속하는 무선국 허가 역시, 통신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제 제도, 및 외국 위성에 의한 미 국내 시장 진입에 관한 제도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항공우주법의 기본 원칙들과 그 구성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위성의 국제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미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통신위성이 망으로서 이용되는 경우, 미국 국적의 통신위성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라도 외국 국적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용 위성은 미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의 위성이라는 점을 FCC는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위성의 국적 부여는 그 위성에 대한 국내법의 관할권 행사 및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 의무를 설정한다는 항공우주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서, 미국 정부가 향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우주개발사업의 일원화되고 중앙집중화된 관리 기관으로서 우주개발사업단을 설립한 바 있으며, 동 사업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개발사업단법 제1조는 우주개발의 평화적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67년 우주조약을 비준하면서, 항공우주법상의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한 국내 입법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위성통신과 위성방송에 대해서 전파법 및 방송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어서 규율한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예컨대, 수탁위성방송사업 및 위탁위성방송사업이 그것이다. 일본 우정성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위성통신 및 방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위성을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동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제2절 우주 활동과 관련되는 국내 법령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활동에 관련되어 별도의 법령이 제정, 운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전파법 및 항공법에서 약간의 관련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1. 전파법

모든 무선통신의 설비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전파법은 통신 위성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및 주파수의 배정에 관한 허가 및 분배 제도 ;
-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통신을 각각의 업무(service)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 위성통신의 허가는 이들 각 업무 중 어느 업무를 행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허가 취득자는 허가에 명시된 업무만을 행할 수 있음. ; 무선국들이 복수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 위성을 이용한 통신을 행할 수 있는 무선국의 종류를 각 통신의 형태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무선국에 대한 허가시 해당 무선국의 종류 및 명칭이 명시되게 됨.
-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 국가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8조의 3)

2. 항공법

우리나라 항공법은 그 규율 대상을 민간 항공기⁸⁾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공 위성등의 우주물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항공법은 우리나라 영공의 횡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항공우주법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영국, 스웨덴 등의 해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항공우주활동의 규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1998년 국제연합 COPUOS에서 회원국들에의 우주활동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조사 사례에서 발견된다. 본 조사 과정에서 초점이 주어진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우주 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우리나라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가? 또 그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국내에 제정되어 있는가?
- 타국의 우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 있는가?
- 국제 조약상 아직 규율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등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우주 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8) 항공법 제2조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

- 기업이나 개인의 우주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감독하여야 함
- 인공위성등의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운용할 시, 그것을 국제연합에 등록하고 그 운용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또는 기업 등의 그 운용자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함)
- 영공의 횡적인 범위에 대해서 현재 우주활동의 관행으로 인정되어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됨.(예컨대, 저궤도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의 비행 고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공 주권이 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그러한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항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항공우주 관련 활동이 실제적인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에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희박하였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공우주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법령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결론 : 항공우주법학의 성립과 발전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 이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기술 발전과 정치 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이 조약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도 어떤 한 국가도 이를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달 및 천체 위성에 관한 국제 협정의 서명국가 수가 20여개국에도 못미치는 점을 보면, 이제 우주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고 법규범을 제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우세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법 분야의 많은 법학자, 또는 변호사 등의 연구는 이제 국제 협정을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상 논쟁, 규범적 원칙에 대한 이론 전개가 아니다. 반면에, 민간 기업들의 우주 활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우주 활동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러 법률 관계들은 다른 부문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을 갖춘 하나의 법학 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우주활동에 관한 법규범과 그를 둘러싼 법률학의 동향이 이와 같이 수십년간에 걸쳐서 하나의 변경선을 건너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우주활동에 관한 단 하나의 조문도 실정법상 두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국제법으로서의 항공우주법에 관한 문헌

Marco G. Marcoff,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1974

Nicholas Mateesco-Matte, "Droit aérospatial", 1968

Jacqueline Dutheil de Rochère, "Droit de l'espace", 1991

Carl Q. Christol,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1984

Gennady Zhukov & Yuri Kolosov, "International Space Law", 1984

Stephen Gorove, "Developments in Space Law : Issues and Policies", 1991

◎ 우주상업활동의 법적 규율에 관한 문헌

Philippe Khan,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espace", 1994

Pierre-Marie Martin, "Droit des Activités spatiales", 1992

Catherine Cousto, "Droit spatial économique", 1996

◎ 정기 간행물

Annals of Air & Space Law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Journal of Space Law

Space Policy

Via Satellite

Satellite Communications

일본 위성통신연보